

붙임 2

제출 서류(2차 면접전형 참여시 제출)

구분	제출서류 목록
<p>(4급) 공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최종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(석·박사의 경우 이전 학위 포함*) * ①석사 : 학사·석사 졸업증명서 / ②박사 : 학사·석사·박사 졸업증명서 ▷ 주민등록초본 (남성지원자에 한하며 병역사항 기재분 포함) ▷ 직무 관련 자격증 * 해당자에 한함 ▷ 법정 가점 대상자 * 해당자에 한함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.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√. (장애인)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서/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√. (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증빙 포함) √. (한부모 가족) 한부모가족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증빙 포함) √.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√. (다문화 가족) ①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 가족관계증명서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공단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및 우수인턴 표창장 * 해당자에 한함 ▷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 및 경력사항 등 증빙서류 일체
<p>장애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/보훈보상대상자확인서
<p>사회 형평적 인재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다음 중 해당되는 사항의 서류를 필수 제출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gray; padding: 5px; margin: 5px 0;"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. (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내용 포함) √. (한부모 가족) 한부모가족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내용 포함) √.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√. (다문화 가족) ①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 가족관계증명서 </div>
<p>경력 직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▷ 경력증명서(회사직인 필수) ※ 폐업 등으로 3개월 이내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보완하여 제출

**(5급)
고졸
인재**

- ▷ 고등학교 졸업(예정) 증명서
 - ▷ 주민등록초본
 - ▷ 졸업(예정)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서 원본(붙임 3 참조)
 - ▷ 고등학교 생활세부사항기록부 사본
 - ▷ 한국장학재단 「학자금 대출·장학금 신청증명서(공공기관 취업지원용)」
 - 1) "해당사항 없음"으로 표시된 증명서 제출(www.kosaf.go.kr 참고)
 - 2) 다만, 학자금 신청사실이 있으나 대학 중퇴자의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
 - ▷ 직무 관련 자격증 * 해당자에 한함
 - ▷ 법정 가점 대상자 * 해당자에 한함
- √. (취업지원대상자)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
 - √. (장애인) 장애인 증명서 및 국가유공자 확인서/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
 - √. (기초생활수급자)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증빙 포함)
 - √. (한부모 가족) 한부모가족 증명서(공고일 기준 자격유지 증빙 포함)
 - √. (북한이탈주민)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또는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
 - √. (다문화 가족) ① 국적취득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여권사본 등 다문화가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 가족관계증명서
- ▷ 공단 청년인턴 경력증명서 및 우수인턴 표창장 * 해당자에 한함
 - ▷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자격사항 등 증빙서류 일체

- 1) 모든 증빙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
- 2)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공고일(23.10.11)을 기준하여 자격유지를 명시한 내용으로 증빙자료 제출하며,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
- 3) 해외 학위, 자격증 및 근무기간 증빙*의 경우 해외 공관의 영사확인을 받거나 국가기관의 아포스티유 확인받은 학위/자격/경력증명서 제출. 해당 사항에 대한 증빙서류는 기한제한 없음(추후 검증)

*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공증 후 제출